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형용 의원 등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년 1월 6일

○ 회부일자 : 2020년 1월 7일

3. 제안사유

-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 등 구직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4. 주요내용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학생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학생 중

현 행	개 정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강근)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은 2020년 1월 현재 강원, 전남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에서 시행중임.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조례 제정 후 2년('11~'12)동안 시행 되었다가 지원대상자 감소추세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사유로 2013년부터는 중단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 도 내 시민사회단체의 사업 재개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8년 4월부터 지원을 다시 시작하였음.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재개 이후,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계획 인원 대비 지원 신청자의 부족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구직활동 및 부채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심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개정안이 제출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3호는,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용어 정의의 개정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본 조항에서, “〈현행〉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개정안>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변경한 것은 그 의미상 차이는 없으며 문구의 경제성 측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3.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 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 2018년 사업재개 이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당초 계획 인원의 23%(18)에 그쳐 사업 대상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또한 이자지원사업이 도비 40%, 시·군비 60%로 지원되는 관계로 시·군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내 11개 시·군 중 과반수를 넘는 8개 시·군이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2년 이내)까지의 확대를 선호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3개 시군은 현행유지 선호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추진 실적**

- 2018년 계획 대비 실적: **22.2%** (계획 인원: 6,400명, 실적: 1,419명)
- 2019년 계획 대비 실적: **21.8%** (계획 인원: 6,400명, 실적: 1,398명) ;10.31기준

- 본 개정안에 따른 충북도의 대상 범위는 현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중인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졸업후 5년), 경기(졸업후 5년), 제주(졸업 후 10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확대된 것임.

- 다만, 비용 추계에서는 재학생의 경우 2018년 기준 계획 대비 실적이 23%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의 23%를, 졸업생의 경우 10% 수준에서 예산추계에 반영했는데, 현 추계 수준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요구되며, 신청자가 계획 인원보다 늘어날 경우,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비용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대출잔액 (A)	실지원대상 (B)	연간 발생이자 (C=B×2.2%)	연간 소요예산			도비 (F×40%)	시군비 (F×40%)
				재학생* (D=C×23%)	졸업생** (E=D×10%)	계 (F=D+E)		
예산	34,135,805	21,129,101	750,987	170,200	17,000	187,200	74,880	112,320
인원	10,118명	7,358명		1,692명	169명	1,862명		

* 재학생 : '19년 실지원대상자 × 약 23% 적용 → **1,692명, 약 1억7천**,

** 졸업생 : 지원 재학생 기준 10% 정도 예산추계 반영 → **169명, 약 1천7백**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용상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구직활동과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심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함.

<참고자료> 시도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현황 (2019. 12. 기준)

(단위 : 백만원)

시도	자격기준			'18 실적		'19 예산	소득기준	비고
	거주제한	대학 소재지	지원자격	인원(명)	예산			
서울	본인 거주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 졸업생(졸업후2년)	17,910	1,512	1,731	8분위 (기초생활수급권 자, 다자녀 제한없음)	
부산	제한없음	부산	재학, 휴학생	4,103	275	440	8분위	
대구	본인 또는 직계존속 거주	대구,경북	재학, 휴학생 졸업자(17~18년도)	2,832	305	350	8분위 (다자녀 제한없음)	
인천	본인, 부모 거주 (1년이상)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 미취업자(졸업후 2년)	-	-	172	8분위 (다자녀 제한없음)	사업재개 (19)
광주	본인 거주	광주	재학, 휴학생, 대학원생	1,636	122	180	제한없음	
대전	본인 거주	대전	재학, 휴학생	1,602	207	270	제한없음	
	직계존속 1년이상 거주	대전 외						
울산	본인 거주	울산	재학, 휴학생	236	9	20	8분위	
세종	본인, 부모 1년 이상 거주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	236	12	20	제한없음	인재육성 재단
경기	부모 또는 직계존속 거주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대학원생 미취업자(대학졸업후 5년, 대학원졸업후 2년)	17,024	979	2,523	제한없음	
충북	본인, 직계존속 1년이상 거주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	1,419	60*	380	8분위	인재양성 재단
충남	본인 거주	충남	재학, 휴학생	206	298	350	8분위	상환액 지원
전북	시군별추진	전북	시군별 상이	-	-	88	-	-
경북	본인, 직계존속 1년이상 거주	대구,경북	재학, 휴학생	1,200	123	100	8분위 (다자녀 무제한)	
경남	본인 거주	경남	재학, 휴학생	1,021	104	105	8분위 (다자녀 무제한)	
제주	본인 거주, 제주소재 고교졸업	제한없음	재학, 휴학생, 대학원생 미취업자(졸업후10년)	2,416	227	300	제한없음	

* 이자지원 내역 : 총지출 120,682천원(이자지원 60,780 / 운영비 : 36,902 / 위탁대행수수료 : 23,000)

※ 강원, 전남 미시행 / ※ 충남(상환액 지원, 1인 150만원까지 / 200명)